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경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9년 4월 9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사유

- 상위법인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, 조문 구성 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, 문구 등을 정비함

4. 주요내용

가.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(안 제2조).

나. 지역아동센터의 수행 사업 규정(안 제4조).

다.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(안 제5조).

라.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에 대한 규정(안 제6,7,8조)

마.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(안 제9조).

바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한 규정(안 제10조).

사.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(안 제13조).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인용 조문 및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, 문구 변경 및 조문 구성 체계를 정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4조**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, “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(보건복지부)”에 따른 센터 사업을 준용하여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.
 - ※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(보건복지부)에 따른 센터 사업
 - 사업영역 : 보호(생활, 안전), 교육(학습, 특기적성, 성장과 권리), 문화(체험활동, 참여활동), 정서지원(상담, 가족지원), 지역사회연계(홍보, 연계)
- **안 제5조**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,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시·도 사무이며, 또한 「아동복지법」 제59조(비용 보조)의 지원 근거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- **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**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없음.
 - ※ 위원회 구성
 - 인원 : 15명 이내, 위원장(보건복지국장), 부위원장(호선)
당연직 위원(2명),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구성

- 안 제13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, 시설 및 설비기준, 안전사고 예방,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지도·감독 실시를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, 조문 구성 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, 문구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집행부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발의된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